

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8 - 86호

2018년도 충청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의거 2018년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10일
충청지방우정청장

1. 시험 일시 : 2018. 7. 21.(토), 10:00 ~ 11:00 (60분)

2. 시험 장소 : 대전광역시 소재 4개 시험장

- 가. 응시표에 명시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타 시험장 시험응시 불가)
- 나. 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명시된 찾아가는 방법 및 소요시간은 추정 자료에 불과하며, 도로정체 등을 고려하여 시간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학교명이 유사한 시험장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대전문정중학교(○), 대전문화여자중학교(×), 충남여자중학교(○), 충남중학교(×))

< 충청지방우정청 우정9급(계리) 필기시험 장소 >

구 분	응시번호	학교(시험장)	시험장 소재지
장애(충청)	480001~480045	대전문정중학교	○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232-11 - 청솔아파트 정류장 106, 705, 916번 버스 이용 도보 10분 소요 - 국화아파트 정류장 105, 316, 514, 617, 706, 911, 918번 버스 이용 도보 10분 소요
저소득(충청)	490001~490027		
일반(충청)	400001~400930		
일반(충청)	400931~401860	충남여자중학교	○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368 - 지하철 1호선 오룡역 7번출구 도보 9분 소요 - 충남여고 정류장 107, 601, 604, 317번 버스 도보 5분 소요
일반(충청)	401861~402700	대전노은중학교	○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로 104 - 지하철 1호선 월드컵경기장역 6번 출구 도보 13분 소요 -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정류장 101, 114, 116, 655, 1002,번 버스 이용 도보 9분 소요
일반(충청)	402701~403290	대전괴정중학교	○ 대전시 서구 가장로 15 - 유승기업사 정류장 101, 104, 105, 107, 211, 315, 316, 318, 604, 618, 703, 706번 버스 이용 도보 10분 소요 - KT인재개발원 정류장 103, 113, 602번 버스 이용 도보 10분 소요

3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- 나.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다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(08:00부터 시험실 개방)

라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)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.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※ 응시표는 인터넷원서접수페이지(<http://kpost.jinhakapply.com>) 응시표 출력페이지에서 출력

마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자제하여 주시고,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 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
바.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, 수정테이프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) 는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, 불량제품 사용을 발생하는 모든 문제(득점 불인정 등)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사. 시험시간 중 일체의 통신기기(휴대폰, 태블릿PC, 스마트시계, 스마트밴드, 이어폰 등) 및 전자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

아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볼펜 똑딱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고,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자.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차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카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산·통신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 워치 등)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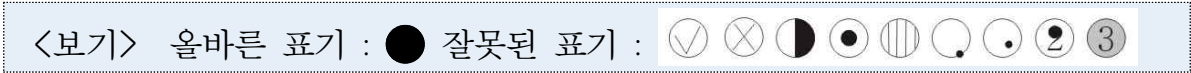
[답안지 기재 및 표기] ※ 붙임(답안지 견본) 참조

가. **특점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**하며,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『**컴퓨터용 흑색사인펜**』 (사인펜에 "컴퓨터용"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사용하여 반드시 <보기>의 올바른 표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특히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,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,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(특점 불인정 등)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책행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※ **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**

나. 적색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**하나의 답만**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 하여야 하며,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며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 주어야 합니다. (**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**)

※ 시험시간 중 수정테이프 등 물품을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.

- **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**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답안은 **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**하여야 하며,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마.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(■■■■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-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·가점·영어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-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 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
▶ **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.**
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(표기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4. 가산점 비율확인 및 표기 안내(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)
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**필기시험 시행 전일(2018.7.20.)까지**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**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**하여야 합니다.
 - **가산점 종류 및 가산비율 잘못 기재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 -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(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)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국가직공무원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(2015.5.6.)에 따라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
가. 취업지원대상자

- 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,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3조,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**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**합니다.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**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**

※ **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 등에 확인**

나. 의사상자 등 대상자

- 『국가공무원법』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**각 과목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**하며,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.

※ 의사상자 등 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**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**

※ **의사상자 등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☎044-202-3258) 등에 확인**

5. 필기시험 가답안 공개 및 합격자 발표

가. 가답안 공개 : 2018. 7. 21.(토) 18시

-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(<http://www.koreapost.go.kr>)

나. 이의 제기 기간 : 2018. 7. 21.(토) 18시 ~ 2018. 7. 25.(수) 18시

- 이의 제기 방법은 가답안 안내 공고문에 게시

다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18. 8. 21.(화)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koreapost.go.kr/cc>)와 인터넷원서접수페이지(<http://kpost.jinhakapply.com>)에 게시합니다.